

# 예산총칙

제 1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계	4,362,277,615	4,047,941,440	314,336,175
일반회계	3,666,220,829	3,449,805,948	216,414,881
특별회계	696,056,786	598,135,492	97,921,294
기타특별회계	366,146,295	351,645,001	14,501,294
농어촌주택사업	11,325,667	11,021,000	304,667
의료급여기금	334,430,628	320,234,001	14,196,627
동부권특별회계	20,390,000	20,390,000	0
공기업특별회계	329,910,491	246,490,491	83,420,000
지역개발기금	329,910,491	246,490,491	83,42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,066,42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